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수·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6. ~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학교의 수·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생
수의 증감 추이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

제5조의3의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보고 등)”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받
은”을 “통보받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 징수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 징수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 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학교의 수·규모, 학교의 학 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 건 및 학생 수의 증감 추이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 조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 계획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⑤ 제1항·제2항 ----- ----- ----- ----- -----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3(<u>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 운용에 관한 보고 등</u>)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 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보고받은</u>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u>통보 하여야</u> 한다.	----- -----. 제5조의3(<u>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u>) ① ----- ----- ----- ----- <u>통보해야</u> -----. ② ----- --- <u>통보받은</u> ----- ----- <u>통보 해야</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 203 - 6641